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4조(배정기준)	8
제 1 조(목적)	제25조(검사관의 역할)	8
제 2 조(적용대상)	제26조(선임 검사관 선정 및 역할)	8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27조(복장)	8
제2장 검사관 운영위원회	제28조(시료채취활동 실적관리)	8
제 4 조(설치)	제29조(수당 등 지급)	9
제 5 조(구성 및 임기)	제7장 평가 및 교육	
제 6 조(위원의 직무)	제30조(평가)	9
제 7 조(심의사항)	제31조(시정교육)	9
제 8 조(회의)	제32조(과실관리)	9
제 9 조(검사관 자격 취소에 대한 재심의)	제33조(감독관 인력풀)	9
제3장 검사관 선발과 양성	제34조(보수교육)	10
제10조(선발계획의 수립)	제8장 자격 재인증	
제11조(모집)	제35조(재인증 조건)	10
제12조(결격사유)	제36조(자격증 발급)	10
제13조(선발절차)	제37조(검사관 자격의 취소)	10
제14조(양성교육)	제38조(자격유보)	11
제15조(현장실습 및 평가)	제9장 보칙	
제4장 검사관 자격 인증	제39조(직원의 검사관 자격 부여)	11
제16조(인증)	제40조(검사관 파견)	12
제17조(자격증 발급)	부칙	12
제5장 복무	별표	
제18조(성실의 의무)	1.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권고하는 바람직한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검사관 선발기준	14
제20조(청렴의 의무)	별지	
제21조(품위 유지의 의무)	1. 도핑검사관 (재)인증 신청서	15
제22조(겸직신고)	2. 서약서	16
제6장 도핑검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7
제23조(시료채취활동 신청)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제정	2018. 10. 26.
시행	2019. 1. 1.
개정	2020. 2. 27.
개정	2021. 2. 26.
개정	2021. 12. 28.
개정	2022. 12. 22.
개정	2023.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도핑검사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ISTI)」 및 관련 지침(Guidelines)에 따라 시행하는 도핑검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인증한 도핑검사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요원(Sample Collection Personnel)”은 시료채취기구(검사주관기구 또는 해당 검사주관기구로부터 시료채취 승인을 받은 기구)로부터 부여받은 시료채취임무를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도핑검사관, 혈액채취요원, 도핑검사동반인을 말한다.
2. “도핑검사관(DCO; Doping Control Officer)”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명시된 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훈련되고 인증된 공식 요원을 말한다(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검사관은 시료채취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도핑검사동반인에게 부여된 임무의 영역 내에 있는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선임 검사관(Lead DCO)”은 배정된 시료채취업무의 책임자로서 해당 도핑검사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검사관을 말한다.
4. “혈액채취요원(BCO; Blood Collection Officer)”은 선수로부터 혈액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부터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요원을 말하며, 이 규정 적용의 대상인 검사관으로 본다.
5. “도핑검사동반인(Chaperone)”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훈련되고 인증된 공식 요원을 말한다. 이하 “샤프롱”이라 한다.

- 가. 시료채취대상으로 선정된 선수에게 통지하기
 - 나. 도핑관리실에 도착할 때까지 선수를 동반 관찰하기
 - 다. 도핑관리실 내에서 선수를 동반 관찰하기
 - 라. 적격한 훈련을 받은 경우, 시료제공과정 입회 및 입증하기
6.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은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와 함께 활동하거나, 치료 또는 지원하는 지도자,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요원, 임원, 의무요원, 부모,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6.>

제2장 검사관 운영위원회

제4조(설치) 검사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핑검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 위원회 직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5년 이상 활동한 인증 검사관을 대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사관이 선출한다. <개정 2021.12.28., 2021.2.26., 2022.12.22.>

- 1. 인증 검사관 3명 이상의 단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 <개정 2022.12.22.>
- 2.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순으로 상위 3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
- 3.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출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1.2.26.>

④ 외부위원은 재임기간 중 인증 검사관 자격 유보, 상실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하고, 1개월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⑤ 외부위원 선출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미달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외부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⑥ 운영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사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26., 2021.12.28.>

1. 검사관 운영 기본방침
2. 검사관 선발계획
3. 검사관 포상 대상자 추천
4. 검사관 자격에 대한 유보, 재인증, 취소 및 검사 배정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검사관 중과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 기타 검사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제7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 ④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사대상 검사관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⑦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⑧ 직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검사관 자격 취소에 대한 재심의위원회) ① 검사관이 제7조제4호에 따른 검사관 자격 취소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할 때에 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2023.12.15.>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1명은 도핑검사부장을 제외한 위원회 부서장급 중에서,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2.26.>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은 소집된 해당 재심의위원회 종료로 만료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검사관 선발 및 양성

제10조(선발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검사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발시기, 선발규모, 선발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핑검사의 대상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성별·지역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모집) ① 위원회는 원활한 도핑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검사관을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검사관 선발 시에는 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1.2.26.>

③ 검사관 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도핑검사관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관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미성년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종목별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그리고 프로스포츠팀과 그 회원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 및 선수지원요원
 12. 종목별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또는 지부에 등록된 선수지원요원
 13. 현재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중이거나, 최근 6년 간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22.12.22.>
 14. 기타 검사관으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선발절차) ① 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검사관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②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직원과 검사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계획의 2배수 내외의 인원을 1차 선발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시자는 정해진 면접전형 일정에 참석하여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검사관 선발과정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권고하는 검사관 선발기준(별표 1)을 반영하여 최종 검사관 양성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교육) ① 위원회는 시료채취절차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검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해 검사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1. 시료채취활동 사전준비 절차
 2. 선수 통지 및 동반 절차
 - 가. 검사관 관찰하에 모의 통지과정 실습
 - 나. 소변시료 모의 입회과정 실습
 3. 소변시료 채취절차

- 가. 시료채취
 - 나. 비중측정
 - 다. 부분시료
 - 라. 추가시료
 - 마. 인증 검사관 관찰하에 모의 선수를 활용한 3회 이상의 시료채취과정 실습
 - 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 의한 잠재적 비준수 상황 대처 및 보고
 - 사. 소재지정보 부재시에 검사시도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혈액시료 채취절차(혈액채취요원 교육에 한함)
5. 장애인 선수 및 미성년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6. 도핑관리 서식작성법
- 가. 도핑검사서
 - 나. 시료보관전달체계서
 - 다. 도핑검사관보고서
 - 라. 추가보고서
 - 마. 기타 서식
7. 기타 필요한 교육
- ③ 검사관 양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현장실습 및 평가) ① 검사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검사관 자격 인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습 및 평가를 시행한다.

- 1. 인증 검사관 관찰하에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입회를 포함한 샤프롱 역할 수행 각각 1회 이상
 - 2.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인증 검사관의 시료채취과정 참관 각각 1회 이상
 - 3. 인증 검사관 관찰하에 경기기간중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시료채취과정 수행 1회
- ② 검사관 인증을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는 양성교육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사업운영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검사관 자격 인증

제16조(인증)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제15조에 따라 현장실습 및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 검사관 자격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제35조에 따른 재인증 요건에 따라 인증을 갱신한다. <개정 2023.12.15.>

③ 검사관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도핑검사관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검사관 자격 인증을 위하여 학력, 경력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증 발급) ① 위원회는 검사관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검사관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자격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핑검사관증
2. 혈액채취요원증

제5장 복무

제18조(성실의 의무) 검사관은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위원회 및 파견시 해당 도핑방지기구 또는 조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검사관은 자격 인증 기간은 물론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의 의무) 검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와 관련된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제안·주선 행위 포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품위 유지의 의무) 검사관은 직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검사관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겸직금지) ① 검사관은 위원회 인증 검사관으로서의 직무 이외에 다른 시료채취기구에서의 검사관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삭제 <2021.12.28.>

제6장 도핑검사

제23조(시료채취활동 신청) 도핑검사 활동을 원하는 검사관은 위원회 '통합도핑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핑검사 공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시료채취가 가능한 도핑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3.12.15.>

제24조(배정기준) ① 위원회는 검사관을 배정함에 있어 해당 검사관의 거주지역, 활동실적, 외국어 능력, 성별, 해당 검사와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검사관의 역할) ① 검사관은 위원회로부터 훈련되고 인증받은 공식 시료채취요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료채취절차 수행
2. 시료채취 관련 문서작성
3. 선수에 대한 통지 및 동반
4. 샤프롱 선정 및 현장교육
5. 소변시료 제공 입회
6. 시료보관 및 전달
7. 기타 시료채취에 필요한 사항
② 혈액채취요원의 경우는 혈액채취 및 관련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선임 검사관 선정 및 역할) ① 선임 검사관은 시료채취팀의 책임자로서 해당 도핑검사를 총괄 지휘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관으로서의 시료채취업무 수행
2. 시료채취팀 사전회의 주관, 임무 부여 및 현장교육 등의 총괄 관리
3.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관련 문서의 최종 확인
4. 별도 임무 부여시 감독관 업무
5. 기타 해당 검사 관련 업무
② 선임 검사관 운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복장) ① 검사관은 시료채취활동 중에는 위원회에서 지급한 유니폼 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선임 검사관은 단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복장을 착용한 시료채취요원을 시료채취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③ 기타 검사관 복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료채취활동 실적관리) ① 위원회는 검사에 배정된 검사관이 해당 검사지시서에 따라 수행한 시료채취활동 횟수를 '통합도핑관리시스템'내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1.12.28., 2023.12.15.>
② 이러한 활동실적에는 검사 신청횟수, 활동실적, 선임 검사관 횟수, 오류 횟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는 직원을 제외한 시료채취업무를 수행한 시료채취요원에
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평가 및 교육

- 제30조(평가) ① 위원회는 검사관의 시료채취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감독관 파견을 통한 현장평가
 2. 검사관 상호평가
 3.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경기단체의 의견수렴
 4. 검사 관련 서식작성 오류에 대한 평가
 5.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 ② 현장평가에서는 국제표준에 따른 시료채취절차 준수 여부, 도핑검사 관련 서식의 올
바른 작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검사관 자격의 재인증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검사관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1조(시정교육) ① 위원회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검사관에 대하여 시정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활동 중 과실발생 <개정 2021.12.28.>
 2.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경기단체 관계자 또는 시료채취요원으로부터의 불만 접수
 3. 검사관이 3개월 동안 어떠한 시료채취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비활동 기간
- ② 시정교육은 대면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온라인 교육 또는 평가 등의 방
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제32조(과실관리) ① 위원회는 시료채취활동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
형별 과실 분류기준과 조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 ② 삭제 <2021.12.28.>
 - ③ 삭제 <2021.12.28.>
 - ④ 삭제 <2021.12.28.>

- 제33조(감독관 인력풀)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5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각종 교육
및 평가시에 활용할 감독관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② 감독관 인력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보수교육) ① 위원회는 자격 인증 만료 전에 종합이론 교육과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재인증과정을 모든 검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합이론 교육에는 최초 인증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권장사항과 검사관 인증 또는 재인증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습교육에는 검사관이 감독관의 관찰 하에 적어도 1회의 실제 채취 또는 모의 채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제8장 자격 재인증

제35조(재인증 조건)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관의 자격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 연간 8회 이상 시료채취활동 여부 <개정 2023.12.15.>
2.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평가결과
4. 기타 위원회가 정한 기준

② 시료채취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인증에 필요한 연간 최소 시료채취활동 횟수를 해당 기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관 재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도핑검사관 재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혈액채취요원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패 등의 신고)에 따른 유효한 면허신고 증명서 <신설 2022.12.22.>

제36조(자격증 발급) ① 위원회는 검사관 재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검사관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자격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핑검사관증
2. 혈액채취요원증

제37조(검사관 자격의 취소 등) 위원회는 검사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제1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에서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검사관 서약을 위반한 경우
5. 검사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6. 12개월 이내에 3회의 중과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회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자격유보) ① 검사관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유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검사관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2021.12.28.>

1. 해외 주재를 하게 된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게 된 때
4. 여성검사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반활동이 불가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유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연도 활동기간을 감안하여 산정된 연간 최소 시료채취활동을 수행한 검사관에 한하여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2021.12.28.>

1. 여성 검사관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게 된 때: 자녀별 1회, 1년 이내
2. 여성 검사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별 1회, 2년 이내
3.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반활동이 불가하게 된 때: 사유별 1회, 1년 이내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유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35조제2항의 검사관 재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격유보 기간이 1년 이내에 만료되는 검사관은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 중 하나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검사관 자격을 재인증할 수 있으며, 자격유보 기간을 연장한 검사관에게는 양성교육 이수와 현장실습 및 평가를 통해 검사관 자격을 재인증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9조(직원의 검사관 자격 부여) ① 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본부 소속의 직원에게는 검사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검사관 자격을 부여받는 직원이 전보, 퇴직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검사관 자격은 상실된다. <개정 2021.2.26.>

④ 삭제 <2021.2.26.>

- 제40조(검사관 파견) ① 위원회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요청에 따라 검사관을 파견할 때는 해당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파견 자격기준, 인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파견 시작일 기준으로 중과실 조치 중인 검사관은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며, 파견기간 중에 파견업무 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파견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전항의 파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검사관에게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파견기간 중의 시료채취활동을 포함한 도핑관리 업무수행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35조의 재인증 조건인 연간 시료채취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파견기간 중 3회 이하의 실적은 연간 시료채취활동 1회로 인정
 2. 파견기간 중 6회 이하의 실적은 연간 시료채취활동 2회로 인정
 3. 파견기간 중 7회 이상의 실적은 연간 시료채취활동 3회로 인정

부칙 <2018.10.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검사관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검사관의 자격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7에 따른 제37조제1항의1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인증받은 검사관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배정제외 기간 중인 검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중과실 처분을 받아 도핑검사 배정제외 기간 중인 검사관은 이 규정 제32조제4항의 조치를 수행한 경우 배정제외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자격유보 중인 검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검사관 자격유보 중인 검사관은 자격유보 기간이 만료되어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 중 하나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사관 자격을 재인증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도핑검사관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0.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제12조의11호 및 12호에 따른 제37조제1항의1호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인증받은 검사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자격유보 신청 검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제38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자격유보를 신청한 검사관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8.>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5조제3항제4호는 2024년도 자격 재인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15.>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권고하는 바람직한 검사관 선발기준

Desirable DCO Attributes

1. The ability to:
 - Demonstrate respectful and professional behavior.
 - Follow instructions, procedures and protocols.
 - Meet schedule demands of required duties.
 - Communicate effectively, both orally and in writing, in the national language(s) of the country in which *Testing* takes place.
 - Speak and understand a second language.
 - Problem-solve quickly and effectively.
 - Mai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 Work in stressful situations / demanding conditions.
2. Awareness of, and comfort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 DCO. (See DCO Training Kit).
3. Willingness to undergo a security check.
4.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in relevant disciplines (i.e. teaching, law enforcement, nursing, sport administration).
5. Knowledge of the sport community and/or the specific sport.
6. Prior experiences within *Doping Control*.
7. Valid driver's license and access to a vehicle.
8. Qualification in phlebotomy.
9. Commitment to the fight against doping in sport.

※ 검사관 모집에 있어 시료채취기구는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해당 국가 또는 기구의 인사관리 정책과 관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도핑검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지침, 한국도핑방지규정,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국제표준과 관련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한다.
- 본인은 도핑검사관 활동 또는 시료채취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임의로 발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본인은 선수 개인훈련, 도핑 관련 연구 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시료채취 대상 선수 또는 경기단체와 관련이 있어 시료채취활동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시료채취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본인은 시료채취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보유한 모든 기록, 문서를 비밀로 관리하며, 위원회의 비소모품, 견본 문서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은 도핑검사관 양성제도, 시료채취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기구, 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사전에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 위원회 이외의 다른 기구, 단체의 도핑검사관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 본인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교육이나 도핑방지 안내서 배포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약물과 관련하여 선수, 선수지원요원 등에게 직접 조언하지 않으며,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본인은 시료채취과정에 대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활동과 관련하여 선물 또는 환대를 받거나, 음주,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은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귀하

